

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1.29)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광용]

목 차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 21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조)
- 나.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취득시점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함.
(안 제6조)
- 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취득시점 기준으로 감면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3.01.07. ~ 01.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

○ 2012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

- **안 제6조**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시행 2013.1.1] [법률 제11618호, 2013.1.1,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학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1.12.31>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9호, 2011.7.21, 일부개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략)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1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 추진에 따라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골자

- 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제7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2항·제3항)
 - ⇒ 전자수입증지 발급 대상(시스템) 확대
 - 종전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추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2.12. ~ 2013.01.0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 추진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6조**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사용 내용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에서는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으로 개정하였음

- 이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6조

[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3521호, 2012.1.20, 타법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시행 2011.12.21] [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12.21, 전부개정]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0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01. 2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함(인상 20종, 인하 13종)(안 별표 1)
-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를 신설함(23종)(안 별표 1)
- 다.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조례로 정해진 사무에 대한 수수료 삭제(3종)(안 별표 1)
- 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세분화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입법예고(2012.12.12. ~2013.01.0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목록(기준) 중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함.

⇒ 인상 20종, 인하 13종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23종을 신설함
-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3종 삭제
-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세분화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

-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시행 2012.9.22]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9.21]

부칙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2월 22일까지는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각각 "승강기보수업"으로 본다.